

예 산 총 칙

2013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527,104,802 | 15,813,144 |
| 일반회계 | 473,997,628 | 14,219,929 |
| 특별회계 | 53,107,174 | 1,593,215 |
| 공기업특별회계 | 37,012,199 | 1,110,366 |
|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| 22,671,096 | 680,133 |
|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| 14,341,103 | 430,233 |
| 기타특별회계 | 16,094,975 | 482,849 |
|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| 1,951,521 | 58,546 |
|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| 2,029 | 61 |
| 신정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| 300,000 | 9,000 |
|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| 1,905,693 | 57,171 |
|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| 8,571,996 | 257,160 |
|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| 3,363,736 | 100,912 |

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

제 3 조 2013년 채무부담 행위는 [해당없음]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[해당없음]으로 한다.

제 5 조 사고이월 사업은 별첨"사고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710,703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